#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037

발의연월일: 2024. 9. 13.

발 의 자:김동아・이건태・이기헌

김남근 • 민병덕 • 김우영

조 국·백승아·김용민

김현정 · 김성환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로 하여금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·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그 배상액을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는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특허권 등 침해행위와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, 기술 탈취 피해기업들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. 그런데 실제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.5배 정도로 집계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

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,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,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28조제8항 및 제9항).

법률 제 호

##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128조제8항 중 "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"를 "배상액으로 정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"을 "법원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"로, "고려하여야 한다"를 "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) 제12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
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8조에 따라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
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28조(손해배상청구권 등) ①	제128조(손해배상청구권 등) ①		
~ ⑦ (생 략)	~ ⑦ (현행과 같음)		
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	8		
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			
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			
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			
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			
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			
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	배상액으로 정한다.		
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			
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	⑨ 법원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		
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	고려하		
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	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.	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		